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7 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권영세·김소희·주호영

박대출 • 구자근 • 이인선

안철수 · 강대식 · 한지아

고동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,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 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.

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,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·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18항,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8항 중 "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"를 "발주청 또는 인·허가 기관의 장은 제1항에"로, "설계의"를 "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, 방법 및 절차와 시정·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계의 안정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2조제18항·제19항 및 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계에 착수한 건설공사 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	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①		
~ ⑰ (생 략)	~ ① (현행과 같음)		
⑧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	18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 기관		
<u>하는 방법과 절차에</u> 따라 <u>설계</u>	<u>의 장은 제1항에안전관</u>		
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	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		
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	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		
여야 한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⑩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		
	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		
	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		
	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		
	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등 적		
	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		
<u>&lt;신 설&gt;</u>	◎ 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		
	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, 방		
	법 및 절차와 시정・보완 등		
	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		
	<u>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	